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35
----------	-------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양부남·김한규·김문수  
윤준병·이정문·박정현  
전진숙·이광희·박지원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119구급대의 출동을 줄이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응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한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추가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0조제1항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

제13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p> <p>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생략)</p> <p><u>&lt;신 설&gt;</u></p> <p>2. ~ 7.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u></p> <p>2.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 ② (생략)</p> <p>③ 소방청장등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u>----- ----- -----.</p>
<p>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제30조(과태료) ① ----- ----- ----- -----<u>1천만원</u>----- -----.</p> <p>② (현행과 같음)</p>